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171,748,714	5,152,461
일반회계		166,945,436	5,008,363
특별회계		4,803,278	144,098
	기타특별회계	4,803,278	144,098
	의료급여기금	265,509	7,965
	주거환경개선사업	40,965	1,229
	주차장	4,432,106	132,963
	지하수관리	38,998	1,170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5,700	77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333,62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